

◆ 교육칼럼 ◆

“자녀 교육에 혼신 바치는 부모마음 교육 당국·지역사회는 외면 말아야”

대학입학수능 고사장으로 가는 학부모님의 심정

지난 11월 12일은 대학입학수능고사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어느 택시회사에서 수능고사장에 가는 수험생을 수송하는데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역 광장 택시 승강장에는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인데 자식의 손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뛰어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학부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애가 좀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달려 나오느라 아침밥은 커녕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나왔노라고 하면서 외아들인데 지난 일년간 수능 준비하는 자식 뒷바라지에 한꺼번에 늙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수능을 잘 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란 말을 남기고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 교육에 대한 깊은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어느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을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굳게 잠겨 있는 정문 앞에는 학부모들이 초조하게 자식들이 시험 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문 옆으로 담장 한 쪽에 감밥 몇 줄을 싸들고 근심스럽게 앉아있는 한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오늘 아침 시간이 늦어 아침밥을 못 먹고 고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쓰러워 고사장에 들어 가있는 딸에게 전해줄 것을 학교 측에 부탁하려고 교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차례씩 치러지는 수능고사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날씨가 더 울췌년스러워 수험생 어머니들이 더 고생스럽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고사장에서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 자식 수능 잘 치르기를 가슴 졸이면서 하루 종일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어머니는 수능 보는 당일에 자식이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나가서 시험시간과 똑같이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까니도 거른 채 자식 시험 잘 보기를 기원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오직 자식 성공이 삶의 이유이자 사는 목적인다고 외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한 열정은 어느 나라 학부모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학부모님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열정을 크게 칭찬하게 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기러기 아빠의 죽음과 자녀 교육 열정

지난 가을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16층에 사는 40대 직장인 남자가 갑자기 위암으로 쓰러져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암으로 인하여 40대 남자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은 종종 있는 사건이며 새삼 뉴스거리가 될 것은 없지만 이 남자의 죽음에 대한 사연이 너무나 기막히고 안타까운 일기에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남자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2년 전에 외국의 한 고



류병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아내가 외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2년째 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소위 기러기 아빠가 되어 혼자서 이 아파트에서 홀아비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혼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식사를 챙겨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컵라면이나 식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며 거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봅니다.

이 남자가 2년 가까이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아내는 외국에서 자녀 교육 뒷바라지에 정신없었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서 자녀를 보느라 위암에 걸렸으며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놓고 볼 때 자식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해가며 자식을 교육시켰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자식이 삶의 이유요 전부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학부모님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님의 자녀들을 교육해 왔고 지금 현재도 교육가족의 한사람으로써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보통 교육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학부모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에 열정을 다 바치는 학부모님의 기대와 소망

지난 2009년 9월 21(월)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2005-200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영역별 1·2등급 평균 비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16개 시·도중에서 언어, 수리, 수리나, 외국어영역 모두 16등 맨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4~5점씩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교하여 뒤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을 때 많은 시민, 더구나 자식의 미래에 온 삶을 걸고 살아가는 학부모님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인천의 학력이 크게 저조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시험 날, 수많은 인천의 학부모님들이 새벽부터 발을 동동 구르며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식이 수능을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 절실하고도 처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고 교육행정가, 학부모, 지역사회인, 언론인 등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오직 자식 사랑에 자신의 삶을 모두 내 던지는 학부모님의 기대를 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훌륭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교육환경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교육환경 조건을 갖추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년의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으로, 아니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법률산책 - 교원의 성추행(2) ◆

교원의 성추행에 따른 학교의 책임은?



김도현 변호사 dhkim@shinkim.com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북경외국어대학 연수(1998)
한국해양대학교 형인물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경력>
상해 화동정법대학 연수(200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부산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저서: '중국반독점법' (2009, 법무사)

명목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활동 과정 중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판결례 또한 이와 같은 입장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09. 1.22. 선고 2008가합2136호 판결 등).

또한 동 판결에서는 해당 학교의 면책 주장, 즉 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충분한 사무 감독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자체로서는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강사를 초빙하여 형식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학교로서는 동 판결에서 정한 기준, 즉 적격검사, 특별연수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교원의 성추행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회에서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의 경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예고된 대로 교원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경우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전회에서 살펴본 바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전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사 A씨의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경우 학교의 책임, 결국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해당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

우선 해당 지자체로서는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알 수도 없었고, A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A씨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건과 같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 중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A씨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A씨의 성추행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인바, 대학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반독점법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국내최초" 해설서
공정거래법 실무서, 압도적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필독서"

- 주요내용
 - 중국 반독점법 실무 M&A 실무 지침
 - 중국투자 또는 압도적기업에서의 문제사실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중국 반독점법 적용사례 - "교차결의 M&A 금지사건" 등 해설

글로벌기업의 중국시장진출 필독서

중국 반독점법

김도현

박사 김도현(양원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북경외국어대학 연수(1998)
북경외국어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제30기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부산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저서: '중국반독점법' (2009, 법무사)

反壟斷法

김도현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펴낸 중국 반독점법론
중국판 공정거래법과 해설서로서
21세기 글로벌기업 M&A를 포괄한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진출 필독서!

법문사 : TEL 031) 955-9530